#### 오산시의회 공고 제2020-14호

##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5월 29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이성혁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○ 저학력·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·저학력 성인인 오산시민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함(안 제3조).
- 나.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,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, 비문해자 인권 존중을 정함(안 제4조).
- 다.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.

- 라.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7조).
- 마.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과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바. 성인문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,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0년 6월 5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i	례 명	: 오산시	성인문해교육	지원에	관한	조례안
□ 의견	제출자					
○ 성	명(단체	명) :				
○ 주		소 :				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	<u></u> 견	비고				
그에만 케ㅇ	찬성	반대		Ľ 	91				

##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성혁 의위 발의)

의 안 제8-315호 번 호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9일

발의의원:이성혁의원

찬성 의원 : 장인수, 김명철, 이상복, 성길용,

하은경 의원

#### □ 제안이유

○ 저학력·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

#### □ 주요골자

- 가. 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· 저학력 성인인 오산시민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함(안 제3조).
- 나.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,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, 비문해자 인권 존중을 정함(안 제4조).
- 다.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7조).
- 마.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과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- 바. 성인문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,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##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: 별첨
  -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. 제4조. 제8조. 제10조
  -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. 제7조. 제16조. 제39조
  -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2조

###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과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오산시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비문해자"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.
- 2. "문자해득교육"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- 3. "성인문해교육"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,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- 4. "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"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 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대상) 문자해득교육(이하 "문해교육"이라 한다)은 오산시민으로써 학령기에 사회적·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·저학력 성인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(이하 "시민등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하며, 국적, 성별, 직업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4조(기본원칙)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

요청되는 문해력 등 사회생활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오 산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다.

-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- ③ 오산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.
- 제5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
  - 2.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
  - 3.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
  - 4.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·육성
  - 5.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
  - 6.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
  - 7.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사업의 공동추진)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
- 제7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  - 2.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, 홍보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 등
  - 3.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, 문화행사 등

- 4.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-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.
- 제9조(수료증) 시장은 시민등의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인문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.
- 제10조(포상 등)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「오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첨]

### 관계법령 발췌

#### [교육기본법]

- 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8조(의무교육)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
  -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  - ② 사회교육의 이수(履修)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  -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## [평생교육법]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<u>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</u>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- 제7조(공공시설의 이용)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· 운영
  - 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  - 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  - 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•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# 【평생교육법 시행령】

- 제72조(문해교육의 지원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
  - 2.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
  - 3.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
  -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